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
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
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
등 각종 행사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개최·운영과 입상자 시상 등에 관
한 근거 신설(안 제26조의2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안배경

- 충북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전국 최초의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로서 생산·가공, 유통·소비, 체험·관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내륙권 최대의 다기능 수산물 복합단지로 만들고자 국비와 충북도 예산 등 약 230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됨
- 하지만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, 관광객의 관심을 끌 만한 관광·체험시설이 부재하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입점한 식당 및 직판장은 운영난에 시달리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단지 내 행사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6조의2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개최·운영과 입상자 시상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,
 -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, 각종 경진대회 등의 개최와 업무의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행사의 추진, 입상자 시상을 통해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의 개정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충북수산물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의 개최·운영·시상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(타당성) 수산물산업거점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입법목적과 그 취지가 타당하며, 조례의 개정은 원활한 수산물산업 관련 행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입 촉진과 충북 수산물산업 경쟁력 제고 등 의미가 있음
- (법적합성) 관계 법령 위배 또는 저촉 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종합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이 이견은 없으나 행사의 운영적 측면에서 경진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사·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 부실한 콘텐츠와 바가지 상술 등으로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